붙임 4

경력증명서 경력기간 인정기준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인정 경력기간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참여기간(경력기간)과
인정일수(참여일) 상이</td><td>인정일수(참여일) 기준으로 인정
예) 참여기간 : 2017.01.01.~2017.12.31.
(인정일수 : 100일)
☞ <u>100일 인정</u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증명서상 인정일수 또는
참여일이 없는 경우</td><td>참여기간(경력기간)을 인정일수로 산정하여 인정
예) 참여기간 : 2017.01.01.~2017.01.03.
☞ <u>3일 인정</u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실제 경력기간과 발급
증명서상 경력기간 차이</td><td>발급 증명서 기준으로 인정
예) 실제 참여기간 : 2018.01.01.~2018.11.30.
(인정일수 : 334일)
증명서 참여기간 : 2018.01.01.~2018.11.01.
(인정일수 : 305일)
☞ <u>305일 인정</u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동일한 기간에
다른(동일) 전문분야(수행업무)
경력 보유</td><td>가장 긴 인정일수로 하나만 인정
예) 건축구조 참여기간 : 2017.01.01.~2017.12.31.
(인정일수 : 365일)
건축기계설비 참여기간 : 2017.01.01.~2017.12.31.
(인정일수 : 365일)
☞ <u>365일 인정</u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기간이
상이한
다른
(동일)
전문
분야
(수행
업무)
보유</td><td>A전문분야(수행업무)
기간이
B전문분야(수행업무)
기간 내인 경우</td><td>가장 긴 인정일수로 인정
예) 조경계획 참여기간 : 2017.01.01.~2017.12.31.
(인정일수 : 365일)
조경시공관리 참여기간 : 2017.01.01.~2017.06.30.
(인정일수 : 181일)
☞ <u>365일 인정</u></td></tr>
<tr><td>A전문분야(수행업무)와
B전문분야(수행업무)
기간이 다른 경우</td><td>각각의 인정일수를 합산하여 인정
예) 토질 및 기초 참여기간 : 2016.01.01.~2016.12.31.
(인정일수 : 365일)
지질 및 기반 참여기간 : 2017.01.01.~2017.12.31.
(인정일수 : 365일)
☞ <u>730일 인정</u></td></tr>
<tr><td>A전문분야(수행업무)와
B전문분야(수행업무)
참여기간이 일부
중복되는 경우
(A+B참여기간
>인정일수)</td><td>각각의 인정일수를 합산하여 인정
예) 건축구조 참여기간 : 2017.01.01.~2017.07.31.
(인정일수 : 100일)
건축품질시험 참여기간 : 2017.06.01.~2017.12.31.
(인정일수 : 100일)
☞ <u>200일 인정</u></td></tr>
<tr><td>A전문분야(수행업무)와
B전문분야(수행업무)
기간이 일부 중복되는
경우
(A+B참여기간
<인정일수)</td><td>각각의 중복되는 참여기간을 제하고 합산 후 인정일수로 산정하여 인정
(합산한 인정일수는 전체 참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)
예) 토질·지질 참여기간 : 2017.01.01.~2017.07.31.
(인정일수 : 212일)
지질 및 기반 참여기간 : 2017.06.01.~2017.12.31.
(인정일수 : 214일)
☞ <u>365일 인정</u></td></tr>
</table>